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95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3.자 농어촌특별세 1,094,640원과 2017. 2. 2.자 농어촌특별세 9,75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5. 25. 산업단지인 B 내에 있는 분할 전 [redacted]시 [redacted]구 C 공장용지 12,107㎡(위 토지에서 2014. 4. 28. D과 E가 분할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후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분할된 C 토지, D 토지 지상에 각 건축면적 326.4㎡인 공장건물 1동씩을 신축하여 2013. 10. 7. 사용승인을 받았고, C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을 건축면적 236.8㎡만큼 증축하여 2013. 11. 13. 증축 부분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이하 위와 같이 신축 및 증축된 각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3. 11. 25. 중소기업인 F의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33.2㎡(이하 '이 사건 건물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액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3. 11. 13. 농어촌특별세액 3,144,140원만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 8. 4.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이하 가.항 기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통칭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위 농어촌특별세액을 전액 환급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임대부분을 각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① 이 사건 건물임대부분에 대하여는, 2015. 8. 5. 원고에게 취득세 12,960,000원(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는 9,428,250원), 지방교육세 686,670원, 농어촌특별세 791,010원{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본세 673,440원(= 과세표준 합계 336,723,622원 × 표준세율 100분의 2 × 세율 100분의 1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가산세 117,57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물 관련 선행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5. 8. 31. 원고에게 취득세 109,718,700원(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는 76,225,310원), 지방교육세 10,209,610원, 농어촌특별세 5,485,920원{= 위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본세 3,811,260원(= 과세표준 1,905,632,880원 × 표준세율 100분의 2 × 세율 100분의 10) + 가산세 1,674,66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관련 선행처분'이라 하고, 위 ①항의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603호로 이 사건 건물 관련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18호}에서 2016. 11. 9. "이 사건 건물임대부분 취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징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임대부분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다만 추징사유가 발생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취득세 면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은 이상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구 농어촌특별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는 취득세 중 본세 9,428,250원에 20/100의 세율을 곱한 1,885,65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791,010원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917호로 이 사건 토지 관련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28. 위 건물 관련 선행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5,485,920원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의 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아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90호} 역시 2016. 12. 7.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는 취득세 중 본세 76,225,310원에 20/100의 세율을 곱한 15,245,062원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별세로 보았다(이하 확정된 각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임대부분에 대한 정당한 농어촌특별세액과 이 사건 각 선행처분 금액의 차액으로, 원고에게 ① 2017. 1. 13. 이 사건 건물임대부분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1,094,640원(= 1,885,650원 - 791,010원), ② 2017.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9,759,140원(= 15,245,062원 - 5,485,92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임대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은 이 사건 각 선행처분과 같이 각각 5,485,920원, 791,010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추가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항목에 대한 2중과세이고, 당초 별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금액을 무시하고 추가로 과세한 것인데다가 고지한 세액이 일부 청구라는 것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잔부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며, 당초처분과 같은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임대부분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면서 그에 부속된 추징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출하였던 점,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되, 추징사유가 발생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취득세 면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규정한 구 농어촌특별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역시 적용하지 않고,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각 선행처분과의 차액을 부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처분인 위 각 선행처분과는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달리하고 있는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만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칠 뿐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위 각 선행처분보다 증액된 농어촌특별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태경

판사 김주식

판사 김기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관계 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단, 이 조항은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 · 법인세 · 관세 ·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0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